

제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담당변호사 김지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서귀포시 D 임야 974㎡ 중 1/2 지분1)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6. 3. 25. 접수 제1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 소유이던 서귀포시 D 임야 97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25.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034호로 C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C가 E에 입금된 관광진흥자금 중 2억 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용으로 횡령하여 소비해 놓고서도 원고에게 나중에 관광진흥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C는 2016. 4. 18.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7. 4. 13. “C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제주지방법검찰청 검사는 C에 대하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A 소유 토지 지상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와 체결하였

다. 이후 건축주인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H은행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이는 융자 조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설공사 관련 비용만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어서 대출신청자인 건축주가 아닌 건축

업자에게 곧바로 기성고에 따라 용자금이 이체되고, 건축업자는 이를 건축주를 위한 공사 대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자취급은행인 H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조건에 따라 2015. 11. 4.경 169,000,000원을, 2015. 12. 17.경 103,000,000원을, 2015. 12. 29.경 118,000,000원을, 2015. 12. 30.경 45,300,000원을, 2016. 3. 29.경 100,300,000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G2)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5. 11. 30.경 132,800,000원을, 2016. 5. 20.경 98,600,000원을, 2016. 6. 30.경 137,000,000원을 각각 같은 명의로 된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904,000,000원의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제주시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철근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이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에서 1,436,300원을 임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413,863,0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2, 2017고단2507(병합), 2017고단2580(병합), 2018고단281(병합), 2018고단922(병합)}은 2019. 2. 14.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C가 H은행으로부터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용자금은 이미 시공한 공사 기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C가 이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9노185), 2020. 5. 14.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보전채권으로 ① 판결금 채권, ② 약정금 채권,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④ 대여금 채권 모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시인 2016. 3. 22.과의 선후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먼저 ① 판결금 채권과 ②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C에 대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일자가 2017. 4. 13.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E 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은 2016. 4. 1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2015.

10. 26. 1억 원, 2015. 11. 4. 1억 원의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④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2015. 10. 26.과 2015. 11. 4.에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억 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31. 제주시 F 지상 휴양펜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2억 8,000만 원에 E에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E과 체결한 사실, E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2억 원은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④ 대여금 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호중, 판사 조정익, 판사 정혜미

1) 이 사건 소가에 비추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지분을 위와 같이 본다.

2) E의 변경 전 상호이다.